

산재 재활보조기구 세부 부품 지급 현황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팔 의지 및 다리 의지 주요 부품
- (조사기간) 2015년 ~ 2022년 9월
- (조사방법) 재활공학연구소 의지재료 수불 결산자료

□ 조사 내용

- 물품 구분은 현행 건강보험공단 물품 분류 기준에 따름
- 주요 부품 중 향후 사용이 필요한 물품 등 추가
-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내역은 포함하지 않음

□ 조사 결과

- 상지용 라이너의 경우 산재요양급여 수가에는 없으나 향후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가화 필요
- 엉덩이관절장치의 경우 조사기간(8년) 중 4건의 지급실적으로 적용대상은 적으나 수리수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 발목·발 장치의 경우 산재요양급여에서는 주로 저가형 단축식 발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형 발은 주로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으로 지급되고 있음

□ 팔의지

구분		물품명	금액	물품코드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라이너/현가장치	라이너	실리콘 암 라이너	580,000	14Y5	0.0								
		아이스로스 어퍼-엑스 락킹라이너	340,000	I-8131XX	3.9	2	2	5	2	9	5	1	5
	현가장치	의수용 셔틀락	397,000	12A1	0.0								
		상박용 하니스 키트	254,000	21A35=1	0.3						1		1
		호스머 전박용 하니스	130,000	51600	0.0								
		호스머 상박용 하니스	130,000	51604	0.0								
어깨장치	마찰식	견갑키트세트	732,000	1257 12R7 10R2	6.6	5	9	9	7	9	3	7	4
		켄달 견갑키트세트	250,000	KAE-04+KTS-03	4.1	9	2	2	7	3	4	2	4
팔꿈치장치	마찰식	상박키트	320,000	12R6	19.4	29	19	19	14	18	21	19	16
		켄달 상박 세트	180,000	KAE-03	8.8	8	5	3	17	12	9	11	5
	힌지식	호스머 팔꿈치 관절	790,000	50606	7.6	11	9	6	5	3	11	8	8
	수동식	엘보	436,000	12K5	8.1	15	11	10	10	4	7	8	
손목장치	마찰식	국산 손목장치	19,000	K-10V18	37.4	33	36	40	36	46	45	44	19
		일반기능 손목장치	108,000	10V18	0.1							1	
		호스머 일반기능 손목장치	130,000	52160	0.1							1	
	신속교환식	호스머 회전형 쿼체인지 손목장치	195,000	52127	0.0								

구분				물품명	금액	물품코드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호스머 버튼형 쿼체인지 손목장치	200,000	51043	0.1						1		
		굴곡식		호스머 꺾임가능 손목장치	350,000	51084	2.9		2	4	1	6	4	5	1
케이블				호스머 후크용 신경줄 세트	95,000		30.3	16	16	40	24	37	42	42	25
손/후크		미관형		리갈 실리콘 일반형 의수	360,000	101L	316.6	320	341	354	321	357	280	294	266
		반자동		반자동 의수 세트(필론케이블)	440,000	8k22	39.0	53	46	42	40	40	39	29	23
		후크		호스머 후크 스텐 중(고무)	710,000	55031/32	2.6	1	1	1	4	2	6	6	
				호스머 후크 알루미늄 대(고무)	530,000	55012/13	12.6	8	5	15	5	14	18	13	23
				후크 알루미늄	590,000	10A71	1.3					5	2	2	1
				후크 스테인레스	1,800,000	10A12	2.8		3	5	2	3		4	5

□ 다리의지

구분		물품명		금액	물품코드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라이너/현가장치	하퇴라이너	실리콘라이너		120,000	KOREC	231.9	366	295	276	217	194	197	193	117
		컴포트라이너		335,000	I-5406XX	137.1	107	129	140	151	164	145	131	130
		아이스로스 컴포트 락킹 웨이브		335,000	I-5303XX	33.3	18	34	48	33	35	36	36	26
		알프스 이지락킹 라이너		330,000	ELDT	25.8	28	25	28	29	27	25	30	14
		향균 실리콘 젤 라이너		247,000	6Y75	16.6	15	10	16	35	24	10	15	8
		아이스로스 더모 락킹		398,000	I-4013XX	7.4	8	3	1	9	16	6	9	7
		아이스로스 더모 락킹 웨이브		398,000	I-4313XX	17.8	5	9	16	19	17	29	25	22
		실리콘 젤 라이너		190,000	6Y70	11.1	.	.	.	5	13	26	25	20
		알프스 GPDT 쿠션 라이너(젤)		270,000	GPFR	7.8	6	8	11	3	15	6	6	7
		대퇴라이너	아이스로스 썬-인 X5 TF	600,000	I-TF673XX/I-TF678XX	36.5	21	24	30	37	33	49	63	35
			아이스로스 대퇴 락킹 라이너	500,000	I-7032XX외	3.3	1	1			2	9	6	7
			대퇴용 실리콘 라이너	419,000	6Y80	7.6	12	7	9	8	5	5	9	6
라이너/현가장치	대퇴라이너	향균 대퇴용 실리콘 라이너		540,000	6Y85	6.0	8	9	6	2	6	8	5	4
		현가장치	락장식 BK	223,000	KOREC	145.8	151	164	164	146	147	162	154	78

구분				물품명	금액	물품코드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필라워 오리지날 셔틀락	165,000	125232MM	95.8	105	108	112	113	80	86	104	58
				아이스락 씰인 밸브 552	100,000	L-552000	33.9	15	23	25	28	42	51	56	31
		벨트		니트라이트 고관절 벨트	130,000	3L928L외	1.5							12	
				TES벨트	189,000	21B37	0.5						1	2	1
영덩관절장치		기계식		기계식 단축 고관절	1,360,000	7E7	0.5	1					1	2	
		유압식		유압식 다축 고관절	5,140,000	7E9	0.0								
회전장치		피라미드		회전어댑터	650,000	4R57	3.6	6	6		1	3	6	4	3
				무릎회전장식BK	226,000		80.5	97	87	75	83	70	75	99	58
무릎장치		브레이크식		켄달 기계식 무릎	340,000	KK-802	2.1				2	2	1	7	5
				브레이크식 단축 무릎(티탄)	860,000	3R49	10.4	15	15	8	10	10	11	8	6
				밸런스 니 OFM2	990,000	1721120	1.5					5	2	2	3
		기계식		기계식 다축 무릎(티탄)	1,039,000	3R30	0.5		2			2			
무릎장치		기계식		토탈니 1900	2,260,000	1900	0.3	1					1		
		공압식		서보 공압식 다축 무릎	2,520,000	3R106-Pro	0.3						1	1	
				공압식 다축 무릎	966,000	3R78	9.8	1	1	1	5	12	11	17	30
				OP2 니	920,000	1724120	1.8				1	2		6	5

구분				물 품 명	금 액	물 품 코 드	평 균	'15	'16	'17	'18	'19	'20	'21	'22
				무릎관절BK	777,000		24.5	48	25	27	32	19	20	23	2
		유압식		회전 유압식 단축 무릎	3,990,000	3R80	1.0		2			1		3	2
				유압식 EBS 다축 무릎	3,870,000	3R60	3.4	5	3	1		2	3	5	8
				토탈니 2000	3,240,000	2000	2.5	3	1	1	2	1	8	1	3
				토탈니 2100	4,420,000	2100	0.4		1			1		1	
				마우크니	3,640,000	MKN01360	2.1			1	3	2	5	1	5
				마우크니 플라스	4,180,000	MKN01660	0.5				1	1	2		
		MPK		씨렉4		3C98	0.1						1		
				레오니		RKN130005	0.1						1		
				안공지능(BK메디텍)			21.0	25	29	22	26	22	15	17	12
발목-발 장치		단축식		단축발(알루미늄)	185,000	1H88 2R51 2R22	75.8	84	75	89	68	68	47	75	100
				단축발(중국제)	162,000	1S03 1232A KAC	40.6	23	61	30	44	44	38	24	61
				발(BK메디텍)	179,850		224.4	314	316	291	259	231	202	159	23
		에너지저장 형		탈레오	1,970,000	1C50	0.4						1		2
발목-발 장치		에너지저장 형		탈레오P	1,800,000	1C53	0.6							2	3
				트리톤	1,970,000	1C60	0.3	1							1

구분				물품명	금액	물품코드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트리톤P	1,800,000	1C63	0.8	1				1	2		2
				트리아스	760,000	1C30	6.3	4	9	6	5	5	9	9	3
				밸런스 풋S	670,000	BSP0xyz	0.9				1		4	1	1

보조기구 부품식 관리 체계 제안

□ 현행 수가산정 및 관리

재료비 + (표준 제작시간×시간당 인건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해당 품목의 사용되는 총 재료비를 모두 합산
- 제작 시간 : 산재 수가의 경우 각 수가 요청 시 의지보조기실에서 제작 시간을 산정 및 요구
- 인건비 :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건의한 의지보조기기사 5급 평균 연봉 기준 시간당 23,340원 적용
- 일반관리비 :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질의내용 검토(안) 송부]('07.03.07)에 따라 완성품(5%)/제작품(10%) 산정

□ 수가 산정기준 개선(안)

[재료비 + (표준 제작시간×시간당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경비 : (재료비 + 인건비) * 일정비율 또는 인건비 * 일정비율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25%)
- 산정 기준 조정(경비 및 이윤의 부재, 일반관리비 비율의 조정(붙임1))
- 수가 산정 기초자료 유지 필요 (제작시간, 재료비 등)(붙임2)

1) 제조원가 중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전기, 운반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
· 제조원가 = 재료비 + 인건비(제작시간 × 시간당 인건비) + 경비

□ 부품식 수가의 산정 방식(안)

구분	수가 금액		
묶음식	수가 부품1 + 부품2.. 제작시간×인건비 경비 등		
부품식	부품 수가 1 재료비 제작시간×인건비 경비 등	+	부품 수가 2 재료비 제작시간×인건비 경비 등
		+	행위 수가 1 재료비 제작시간×인건비 경비 등

- 각 부품 수가에 경비, 일반관리비 등 을 포함하여 부품 수가 구성
- 일반 부품 이외의 제작 부품에 관련한 행위 수가 산정 필요

□ 관리 운영 방안

- (운영기관) 부품별 수가 신청 접수/제안 및 자료 검토
- (심의기관) 부품별 수가 심의 및 승인/결정
 - ※ 소속병원 요양급여 운영위원회 주관부서
- (운영범위) 팔 또는 다리 의지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부품별 코드화 마련 및 소속병원 시범수가 운영
 - ※ 향후 품목 확대 단계적으로 추진

신청/접수/승인

- 의지보조기기사 내용 검토
-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의 자문 진행
- 운영위원회를 통한 승인/결정

소속병원 요양급여

- 소속병원 내에서 처방/사용 가능
- 부품 실용성/내구성 등에 대한 검증

산재 소속병원 요양급여

- 부품별 코드화
- 신규 제작 및 수리 적용

붙임1. 재활보조기구 수가 산정 기준 비교

- 재료비 :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
- 인건비 : 작업에 종사하는 인건비 (간접인건비 :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인건비)
- 경비 : 제조원가 중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전기, 운반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 / (재료비 + 인건비) × 일정비율 또는 인건비 × 일정비율
- 일반관리비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의 비용 (임원, 사무실직원 급여, 여비, 보험료 등) / 제조원가 × 일정비율 (6~14%)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25%)

구분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합계
	재료비	시간당 인건비 (20시간)		경비				
1안 (2017:충남대)	500만원	18,000원 (360,000원)		20%(업체 평균) (1,072,000원)	6% (337,920원)	18%(업체평균) (318,586원)	동일 (미적용)	7,088,506
2안 (2015:인제대)		11,440원 (228,800원)		18.56%(제조업 평균) (970,465원)	제외 (영세업체 다수)	10% (05년 보장구 기준액) ²⁾ (119,927원)		6,319,192
3안 (2011:보훈처)		직접 23,497원 (469,940원)	간접 8.83% ³⁾ (482,996원)	직접 6.06% ⁴⁾ (57,748원)	간접 20.44% ⁵⁾ (194,780원)	1.45% (89,979원)		6,295,443
4안 (현행)		23,340원 (466,800원)		없음	10% (546,680원)	없음		6,013,480

2) 장애인 소득 수준을 고려한 이윤율 하향 책정

3) (재료비+직접인건비) * 8.83%

4) (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 * 6.06%

5) (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 * 20.44%

붙임2. 산재 재활보조기구 부품별 수가 유형·기준액(안)

[illegible]

(2023년도)산재요양급여 수가 개선 사항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명	수가금액	비고
신설	·	위팔의지-미관형(실리콘형)	·	상지의지 실리콘형
	·	위팔의지-기능형(실리콘형)	·	〃
	·	아래팔의지-미관형(실리콘형)	·	〃
	·	아래팔의지-기능형(실리콘형)	·	〃
	·	위팔의지 소켓교환(실리콘형)	·	〃
	·	아래팔의지 소켓교환(실리콘형)	·	〃
	·	위팔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	〃
	·	아래팔의지 실리콘라이너 교환	·	〃
	·	기능형 의수-손목관절 장식 교환	·	
	·	어깨밴드 교환(기능형)	·	
	·	고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	흡입보자기 교환	·	
	·	종아리의지 밴드 교환	·	수가삭제로 인한 조정필요
수가인상	타-32-4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3,934,000	
	타-45-2	팔꿈치 관절의지 장식교환	964,000	
	타-56	종아리 의지 장식교환	119,000	
	타-58	종아리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수가삭제로 인한 조정필요

□ (신설)위팔의지-미관형(실리콘형) 등

- 기존 어깨밴드로 고정하는 형태와는 달리 다리의지처럼 실리콘라이너를 사용하여 착용하는 위팔의지 및 아래팔의지가 제작됨에 따라 관련 수가 신설 필요

□ (신설)기능형 의수-손목관절 장식 교환

- 상지의지 - 아래팔소켓과 말단장치를 연결하는 손목장치의 파손 시 교체 필요

※ (부품구입가격 : 110,000원)

□ (신설)어깨밴드 교환(기능형)

- 기존 어깨밴드 교환(미관형)(타-45)은 수가 24,000원으로 있으나. 기능형의 경우 작업이 복잡하고 부품의 사용정도가 달라 현 수가로는 적용 불가하여 기능형 수리수가 신설 필요함

※ (부품구입가격 : 200,000원)

□ (신설)고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연간 대상자 수는 적으나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 있음

※ (부품구입가격 : 300,000원)

□ (신설)흡입보자기 교환

-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착용 시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이며, 현재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품구입가격 : 60,000원)

□ (신설)종아리의지 밴드 교환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 밴드 교환(타-57)(83,000원) 삭제로 인하여 종아리의지 콜셋밴드 교환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이와 구분하여 일반적인 환부 길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위한 일반적 밴드 교환을 위한 수가 신설 필요

□ (수가인상)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타32-4)

- 구성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완제품 기준으로 제조원가가 100만원 정도의 가격인상 요인발생.

※ 수가인상 불가시 사용자 개인부담금 발생 불가피함

□ (수리수가)팔꿈치 관절의지 장식교환 (기능형)(타-45-2)

- 기존 사용 제품 단종으로 호스며 단일부품만 판매되고 있으며, 기존수

가로는 부품 구입비에도 부족 함

※ (호스머 부품구입가격 : 1,100,000원)

□ (수가인상)종아리 의지 장식교환(타-56)

- 수가보다 부품가격이 더 비싸 차액을 환자가 개인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연간 대상자 수는 적으나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 있음.

※ (부품구입가격 : 280,000원)

□ (수가인상)종아리의지 콜셋밴드 교환(타-58)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 밴드 교환(타-57)(83,000원) 삭제로 인하여 하퇴 환자 중 환부의 길이가 짧아 맞춤 콜셋 제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수가 인상 필요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 」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경인지역본부장(보상2부장)

(경유)

제목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질의내용 검토(안) 송부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06년도 인천중앙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지급결정과 관련 재활보조기구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관련규정 및 전문가의견 등을 참고하여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진료비지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활보조기구 지급관련 질의내용 검토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진료비심사팀-729 (2007.03.07.) 접수

우 150-98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진료비심사팀 / www.welco.or.kr

전화 02)2670-0521 전송 02-2670-0550 / masim2@hanmail.net / 대국민 공개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질의내용 검토

1. 질의배경

- 재활공학연구소는 '06.3월부터 재활보조기구(욕창예방매트리스 등 6종)를 구매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산재환자에게 공급하고 동 비용을 인천중앙병원 진료비에 포함하여 경인지역본부에 청구(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로 청구)

※ 재활보조기구 청구내역 : '06.3월, 4월, 5월, 8월분 (335,440천원)

- 경인지역본부는 진료비 심사시 동 연구소에서 구매한 가격을 조사한 후 구매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동 차액분을 삭감조치

※ 재활보조기구 삭감액 : 90,643천원(욕창예방매트리스가 87,880천원으로 삭감액의 97%를 차지)

- '06.12월 인천중앙병원은 연구소의 구매가격에 산재환자에게 판매시까지 소요된 제반경비 및 이윤 등을 계상하여 새로운 거래실례가격을 산정 재청구하였으나 경인지역본부는 재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려

※ 재청구 금액 : 구매가격에 소요비용 24,136,500원을 계상하여 청구

- 이에 산재의료관리원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구입한 제품의 원가에 매입관리, 납품 등에 소요된 제반경비와 이윤을 계상하여 인천중앙병원에 공급하여 공단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가 가능할 경우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2. 관련규정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 제10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3. 재활공학연구소의 업무개요

가. 업무범위 (재활공학연구소운영지침)

- 제3조(업무) : 연구소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재활공학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장애인 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기기 및 치료, 훈련기술의 연구·개발 ②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공급 및 관련 재활치료·훈련의 제공 ③ 재활기기의 기술 및 제품 표준화를 위한 시험검정 및 의지·보조기기사 실무교육과 양성 ④ 국내 관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보 교류 및 협력 등 기타 종합연구·개발업무의 수행
- 제20조(제작·공급절차) ① 제작실장은 의사처방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작·공급하며, 제작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불각서 징구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서비스업, 종목 : 보장구연구, 제작·판매

나. 재활보조기구 판매 및 비용청구 절차

- 재활보조기구를 자체 제작하거나 입찰을 거쳐 완제품을 구매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공급하면서 동 비용은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격으로 징수
- 그러나 인천중앙병원의 환자인 경우에는 주치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우선 지급한 후 동 비용의 청구는 인천중앙병원의 진료비에 포함하여 공단에 청구(재활보조기구 판매수익은 연구소 회계로 처리)

※ 산재환자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동 비용을 공단에 이종요양비로 청구할 경우 환자에 대한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과 청구절차상 번거로움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공학연구소를 대리하여 인천중앙병원이 청구를 대행하였고 경인지역본부에서도 이를 심사 지급

다.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공급 사례

구분	치방의료기관명 (보험재정)	환자명 (치방일)	품목	판매가	판매가 산출내역				
					합계	구입원가 (재료대)	인건비	일반관리 비	이윤
제작품	울진의료원 (의보)	이원희 (‘06. 10.2)	손목관절 의지	450,000	433,122	236,570	151,000	27,684	17,868
"	상주직십자병원 (건보)	김종연 (‘06.10.10)	넓적다리 의지	1,560,000	1,274,309	779,520	362,400	87,408	44,981
완제품	인천제일의원 (자보)	장경예 (‘06.7.19)	나이트식 하리보조기	136,000	129,717	40,000	75,500	6,061	8,156
"	(건보)	박종석 (‘06. 1.3)	활동형 휠체어	638,000	709,692	600,000	66,400	33,320	9,972
"	(일반)	박성만 (‘06. 3.24)	활동형 휠체어	638,000	709,692	600,000	66,400	33,320	9,972
"	(일반)	유원목 (‘06. 5.9)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건보)	최종순 (‘06. 6.16)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의료보호)	한동희 (‘06. 9.21)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일반)	김민태 (‘06.11.21)	집노기	57,000	59,819	47,000	8,861	2,793	1,165

4.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현황

가. 품목별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건)

품목명	고시가격	수급자수	청구액	지급액	조정액
계		4,931	2,856,870	2,590,433	266,437
욕창예방매트리스	1,850	790	1,429,000	1,337,800	91,390
욕창예방방석	250	2,034	541,653	507,613	34,040
집노기	57	356	20,923	19,327	1,596
휠체어	480	914	529,164	435,905	93,260
전동휠체어	2,090	140	325,064	280,780	44,284
목발	150	673	11,066	9,458	1,608

나. 청구금액별 구분

(단위 : 원, 건, %)

품목명	수급자수	청구금액별 구분			
		고시가격 또는 고시가격 이상	비율	고시가격이하	비율
계	4,931	3,982	80.8	949	19.2
욕창예방매트리스	790	779	98.6	11	1.4
욕창예방방석	2,034	1,849	90.9	185	9.1
집뇨기	356	302	84.8	63	15.2
휠체어	938	598	63.8	340	36.2
전동휠체어	140	111	79.3	29	20.7
목발	673	343	51	330	49

- 인천중앙병원 재활보조기구 삭감액중 욕창예방매트리스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06년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고시가격으로 지급한 건수는 전체의 98.6%임

5. 질의에 대한 검토

가. 쟁점사항

-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10조제1항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활공학연구소가 재활보조기구를 인천중앙병원에 납품하고 인천중앙병원 은 동 비용을 연구소에 지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천중앙병원에서 연구소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본 건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환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였고 단지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연구소를 대리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진료비로 청구한 것임

- 따라서 본 질의의 쟁점은 연구소에서 인천중앙병원의 환자에게 공급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소 구입가격으로 산정할 것인지, 구입가격에 환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이 아닌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판매 기관임

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재활공학연구소는 국가출연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연구기관으로 각종 재활기기, 훈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재장해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실태가 보장구 연구 및 제작·판매 하는 사업장으로 이윤추구 보다는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개발·공급이 목적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 방법

- 재활보조기구를 자체 제작하여 산재환자에게 공급
 - 제품의 제작원가에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판매
-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 구매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 및 이윤 등을 계상하여 판매

- 산재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도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매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품을 구매하여 환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까지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
-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지급비용의 산정은 구매가격에 구매 및 공급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재활공학연구소의 설립취지로 볼 때 이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6. 결론

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공급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비용의 산정

- ‘06년 요양비지급현황으로 볼 때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98.6%가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격으로 지급하였는 바,
 - 재활공학연구소가 자체 입찰을 거쳐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연구소에서 제품을 환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구매가격에 동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동 제반비용은 환자의 거주지 또는 판매까지 소요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생되므로 매 판매시 마다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
 - 따라서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 04-160-3, ‘06.12.29)” 제4절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일반관리비 등)의 규정을 준용
 - 동 소요비용은 ‘06년도 구매가격에 5%를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 노동부에서 ‘07년도에 고시될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한 가격결정도 재활공학연구소 납품단가에 일반관리비 5%를 계상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결정

◇ ‘07년 고시예정인 재활보조기구 수가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연구소 납품단가	일반관리비(5%)	합계 (고시가)
욕창예방매트리스	1,380,000	69,000	1,449,000
활동형휠체어	720,000	36,000	756,000

□ 전문가 의견

○ 김광덕 변호사

- 재활공학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업무,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주장하는 제반비용과 이윤 모두 비용 산정은 곤란

- 따라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5%를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세현 자문위원

- 과거 산재보험 자체수가 적용시에도 자체 제조한 약품의 경우 생산원가에 10%를 가산하여 약대를 산정한 적이 있었는 바,
-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 이익금 등을 매출액 외형에 10%를 계상하는 점과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을 고려할 때 구매가격의 5%~10%범위내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재활보조기구 산정금액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 진료비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 처분결정이 행하여진 이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구제절차인 진료비이의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그러나 본건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재활보조기구 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단간의 상호간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경인지역본부의 진료비 삭감결정에 대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행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본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결정기로 이의신청을 보류하였고,
- 금번 질의와 관련 재활보조기구 산정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

□ 전문가 의견

○ 김광덕 변호사

-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을 유보토록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견지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 이세현 자문위원

- 원처분청의 언질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보류된 것이며, 문제가 된 비용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급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

첨부 : 1. 재활보조기구 청구관련 질의회시 요청 공문 1부.

2. 기타 관련근거 1부. 끝.